2025년도 인천광역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1.0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모빌리티)

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1.0 참여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장,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① 『레전드 50+』1.0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모빌리티 신(新)기술전환 지원
- **(프로젝트 기간)** '25년~'26년(2년)
- (프로젝트 내용)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인천지역 특화분야 기업 집중 육성

분야	주요내용					
	인천의 주력산업 중, 글로벌 경쟁력 선점이 시급한 ①물류로봇 ②자율					
모빌리티	주행로봇 ③모빌리티 소부장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선택·집중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모빌리티 선도기업 육성					

2 참여기업 선정

- (지원자격)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①물류로봇 ②자율주행로봇 ③모빌리티 소부장 기업 대상
 - 본사, 지사, 공장 중 1개 이상 인천에 소재한 기업지원 가능
 - 다만, 신청기업 수요가 스마트공장 구축에만 해당하는 경우 중견기업도 가능
- (선정규모) 10개사 내외
- (선정기준) 참여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 선정평가시, 신청기업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 결과 참고
 - * 계량점수는 증빙 기준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가지표	배점	비고			
	프로젝트 부합성	·프로젝트 추진목표 및 전략과의 부합성	10				
	=== TB 0	·프로젝트 지원대상 및 내용과의 부합성	10				
	참여(지원) 필요성	・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10				
공통지표	검색(시전) 골표경	·프로젝트 참여(지원)에 대한 적극성 및 참여의지	10	비계량			
(80점)	목표 및 계획	•신청기업의 수행목표 수립의 적절성	10	4/1/0			
	수립의 적절성	·신청기업의 연차별 수행계획 및 내용의 적절성	15				
	신청기업의 역량	·신청기업의 사업화 등 지원프로그램 수행 역량	15				
	20718-1 40	(대표자/책임자, 주생산품/보유기술, 재무상태 등)	13				
	신청기업 유망성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종업원수 증가율(`21~`23)	10	계량			
자율지표	LO11 1100	·최근 3년 R&D 투자 비중(`21~`23)	10	7110			
(15점)	신청기업 규모	・신청기업의 매출액, 종업원수 규모(`23)	5	계량			
				"0			
우대가점	지역내 파급효과	・신청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파급효과	5	비계량			
(5점)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고용 등)		, "0			
배점 합계 100 -							

- (평가방법) 선정평가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 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으로 함
- 선정대상 기업은 선정평가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총점 60점미만은 선정제외

 (지원내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프로젝트 지원사업 합동공고를 통해 진행될 '프로젝트 지원사업(참여기업 전용)'에 신청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2024년 인천광역시「모빌리티 新 기술전환 지원」프로젝트 지원예정 사업 현황>

구 분	지원분야	지원사업명	2025년 지원규모(안)
	컨 설 팅	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7.4억원
	수출지원	② 수출바우처	6.9억원
ᆺᄱᄞ	정책자금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100억원
중소벤처 기업부	제조혁신	④ 스마트공장	4.1억원
/ I 년구 	산학연 R&D	⑤ 산학연 Collabo R&D	향후 확정
	인 력	⑥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1.1억원
	보 증	⑦ 기술보증기금	25.6억원
		합 계	약 145.1억원

③ 유의사항

○ **(중복참여 불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지역특화 프로 젝트『레전드 50⁺』참여기업 선정계획에 **중복으로 참여 불가***

-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선정 이후라도 **참여기업 선정취소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구 분		신청자격 요건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 (중소기업 ¹⁾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²⁾)
공통	1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ㅎㅎ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 사업장소재지 가 신청 프로젝트 해당 시·도에 소재 하는 기업
		· 프로젝트별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기업 (선택한 프로젝트에 한함)
개별	5	* 시·도별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참조(프로젝트별 대상, 업종·산업군 등 상이)
	4	· 그 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 하는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 ※ 개별 신청자격 요건은 별첨자료 참조
- (신청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ᅵ 구	분	신청제외 대상
	1	• 휴.폐업 중인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3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공통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4	등)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되거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5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허위 및 부정한 방법(제3자
))	부당개입 등)으로 신청한 자 또는 기업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
 개별	6*	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
개필		에서 제재 중인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7*	·그 외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 ※ 개별 신청제외 대상은 별첨자료 참조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추진절차 및 일정

○ 참여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참여기업 모집공고		참여기업 신청·접수		참여기업 심사/선정		참여기업 선정확정		지원사업 합동공고		지원기업 심사/선정		프로젝트 지원
공고게시	•	온라인 신청	•	사전검토/ 선정평가	•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	중기부 사업(공동)	▶	사업별 심사·선정	•	사업별 지원
11.8(금)		~11.27(수)		~12.11(금)		12.20(수)		`24.12월~		′25.2월		'25.3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4. 11. 8.(금) ~ 11. 27.(수)
 - 인천테크노파크(ITP뉴스-지원사업) 및 비즈OK홈페이지 공고 게시*
 * 인천테크노파크(https://itp.or.kr/), 비즈OK(https://bizok.incheon.go.kr/)
- **(접수기간)** 2024. 11. 11.(월) ~ 11. 27.(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홈페이지)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s://bizok.incheon.go.kr/
- ※ 온라인(비즈OK 홈페이지)을 통한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접수
-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은 불인정하며,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제출 권장
- * 비즈OK 홈페이지(로그인) → 기업지원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모집공고 → 기업지원사업 신청
- **(신청서 서식 참고)** 참여기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첨부된 지역 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관리지침 별지서식 참조

구분	제출서류	서식 여부	비고		
1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신청기업 자가진단표	서식 1	필수		
2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참여기업 신청서	서식 2	필수		
3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참여기업 수행계획서	서식 3	필수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4	해당시		
5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5	필수		
6	참여의사 확인ㆍ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서식 6	필수		
7	K-TOP Tech-Index 표준양식	별첨 1	필수		
8	성장성, 혁신성 자가진단표	별첨 2	필수		
9	사업자등록증	-	필수		
10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필수		
11	공장등록증 ※ 스마트공장 지원기업은 필수 제출	-	해당시		
	매출실적 관련 증빙자료				
12	*('21~'23)표준재무제표(결산확정), ('23)회계법인, 세무서 등에서 공인된 재무제표기준	-	필수		
	고용현황 관련 증빙자료				
13	*("`21`~'23)고용보험가입자명단가입자수(대표자제외) ※ 고용보험가입자명단 검색기간은 연도별 12월 31일 하루 기준(3개년제출) (예시)검색기간: 2022년 12월 31일~2022년 12월 31일(1일)	-	필수		
	수출실적 관련 증빙자료		필수		
14	14 ★('21~'23)수출실적증명서(직접)기준, 수출액 및 수출업력 -				
1.5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증빙자료		피스		
15	*('21~'23) 특허,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_	필수		
16	기업 소개자료 등(모빌리티 관련 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필수		

- 6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관련규정)**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관리지침

7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총괄	인천광역시 (산업정책과)	032-440-4207
프로젝트 관리	주관	(재)인천테크노파크 (로봇센터)	032-727-5011, 727-5016
시스템 문의	기관	(재)인천테크노파크 (BizOk 시스템담당)	070-8787-8286

별첨1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개별요건〉

사업명	내역명	(개별 4)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 <공통요건은 「별지 제8호」참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일반 바우처	• (신청자격)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제한 조건 없음)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C" 업종 적용<참고 1>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소기업 기준 분류기호 "C" 업종 적용<참고 2>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적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5대 분야 2개 용도 21개 사업	(신청자격)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내용 참고							
	내수기업	•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0~1천불 미만인 중소기업 * 추가사항: 간접수출만 있는 경우 희망시 내수기업으로 신청 가능							
	수출 초보기업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천불 이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 바우처	수출 유망기업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 성장기업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수출 강소기업	· (신청자격)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창업중심 대학	창업기업	•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스마트 공장	고도화1 (지역특화)	• (신청자격)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 제조 중소중견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컨소시엄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지역특화 산업육성	지역주력 산업육성 (기업지원)	·(신청자격)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지역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중소기업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의 만 39세 이하 신진 연구인력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 하 청년인력							
연구인력 지원(R&D)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의 고경력 연구인력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 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기술보증 기금	기술보증 기금	·(신청자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별첨2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개별요건〉

사업구분	(개별 7)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공통요건은「별지 제8호」참조>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특수관계 기업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기업 (예외 : '23년 1차, 2차 사업에 선정되어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는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대표자/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개별 6)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3>을 영위하는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예외 : ①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그린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 ② 사회 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③협동화 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참고 4>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①: 업력 7년 미만,「소득세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예외②:「중소기업협동조합」상의 협동조합 - 예외③: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대상①: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인 기업 - 대상②: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인 기업(예외: 유형자산, R&D투자액 모두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 - 대상③: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예외: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예외①: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예외②: 실질기업주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예외③: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대상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 평가회사 BB등급 이상 기업(예외: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3년까지 예외) 대상②: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예외: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 소자산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대상③: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사업구분

(개별 7)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공통요건은 「별지 제8호」참조>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①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융자방식) 신시장진출지원, 신성 장기,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예외② : (과거실적 산정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예외③ : (신규지원 예외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예외① :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 예외② : (융자방식)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예외①: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자금, 용도, 융자방식, 대상) 긴급경영 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시설자금,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예외②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
- 수출 바우처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세조합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도메 犬 오메립 	46331, 3 / 4722中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창업중심 대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참고 5>
- •사업연도가 '24년인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사업구분	(개별 7) 지원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공통요건은 「별지 제8호」참조>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소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 □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스마트 공장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영위 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지역특화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면서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산업육성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②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 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KOSPI 상장기업(비효율부문 보증기업으로 운영)
=14.1.=	·도박게임, 사치향락 업종 영위기업
기술보증 기금	•보증금지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보증제한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u>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u>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4. 1차 금속 제조업	C24	1,500억원 이하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А	
8. 광업	В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평균매출액등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000억원 이하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 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평균매출액등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800억원 이하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E	
(수도업은 제외한다)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Н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М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	N	ᆑ그메츠애드
대업은 제외한다)	(N7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000기년 이이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ᆑ그메츠애드
42.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3. 임대업	N76	+00기년 이의
44. 교육 서비스업	Р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ᆑᄀᆒᄎᅅᄃ	
9. 1차 금속 제조업	C24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Α		
19. 광업	В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0. 운수 및 창고업	Н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М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ᆏᄀᆒᄎᅄᄃ
41. 교육 서비스업	Р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 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융자제외 대상업종 및 예외

※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산업분류코드	
업종 분류	(KSIC)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46102 中	담배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 ~ 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에울, 프로브 X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기로로 기비트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 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융자제외 업종 운용의 예외

- 이 제조업 영위기업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o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분야, 그린분야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사회적경제기업 : 소상공인,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 소상공인 지원 허용
 - * (추진주체) 협동화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 (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중소기업 정책자금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본 자료는 2023년 기준 참고자료로,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시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번호	업종(KSIC-10)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1	A01(농업)	178.0	500.0	1000.0
2	A03(어업)	252.9	500.0	1000.0
3	B(광업)	167.4	500.0	1000.0
4	C(제조업)	121.9	365.7	731.4
5	C10(식료품)	150.7	452.1	904.2
6	C11(음료)	136.3	408.9	817.8
7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31.9	395.7	791.4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33.0	399.0	798.0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21.5	364.5	729.0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59.2	477.6	955.2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19.1	357.3	714.6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7.7	383.1	766.2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30.7	392.1	784.2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98.5	295.5	591.0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69.3	207.9	415.8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20.3	360.9	721.8
17	C23(비금속 광물제품)	99.6	298.8	597.6
18	C24(1차 금속)	134.6	403.8	807.6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38.0	414.0	828.0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02.1	306.3	612.6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1.7	275.1	550.2
22	C28(전기장비)	108.3	324.9	649.8
23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18.5	355.5	711.0
24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161.6	484.8	969.6
25	C31(기타 운송장비)	313.7	500.0	1000.0
26	C32(가구)	164.8	494.4	988.8
27	C33(기타 제품 제조업)	120.2	360.3	721.2
28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65.2	495.6	991.2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20.1	500.0	1000.0
30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0.9	362.7	725.4
31	F(건설업)	107.9	323.7	647.4
32	G(도매 및 소매업)	136.8	410.4	820.8
33	H(운수 및 창고업)	174.2	500.0	1000.0
34	l(숙박 및 음식점업)	381.0	500.0	1000.0
35	J(정보통신업)	119.6	358.8	717.6
36	L(부동산업)	445.1	500.0	1000.0
3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5.5	376.5	753.0
38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3.6		1000.0
39	P(교육 서비스업)	163.4	490.2	980.4
4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4.2	500.0	1000.0
41	기타산업	194.5	500.0	1000.0

¹⁾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2)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1년)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참고5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제외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업종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